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2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개요	5
2. 개별 검토	24
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 이전의 적절성	24
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28
※ 참고자료	34
1. 가스 분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34
2. 전기위원회 개요	3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
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
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조).

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9
조 및 제10조).

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18조제5
항).

라.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
24조제1항).

바.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
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의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9조의7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요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공급규정의 승인 등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와 그 권한 일체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1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2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¹⁾.

[개정안 조문대비표²⁾]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업의 허가) ① ----- -----「에너지법」 제10조 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이하 “ <u>전기가스열위원회</u> ”라 한다)----- ----- <u>총리령으로</u> -----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② -----

1) 개정안과 연계하여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2호) 및 ② 전기사업·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19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이상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 주요 조문만을 명시하였으며, 전체 조문대비표는 의안원문 참조

현행	개정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⑨ (생략)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 ----- ----- -----, -----총리령으로----- ----- ----- ③ ----- ----- ----- ----- ----- -----, ----- -----총리령으로----- ----- ----- ④ ----- ----- -----, ----- -----총리령으로----- ----- ----- ⑤ ----- -----전기가스열위원회회의----- -----총리령으로----- -----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illegible]

현행	개정안
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한다.	② ----- ----- ----- <u>총리령</u> 으로-----.
제10조(과징금)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과징금)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한다.	② ----- ----- ----- ----- ----- <u>총리령</u> 으로-----.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현행	개정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	----- ----- -----.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 ----- ----- <u>총리령으로</u>----- ----- ----- <u>전기가스열위원회의</u>----- -----. -----. ② ----- ----- ----- ----- ----- ----- <u>총리령으로</u>----- -----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 -----. ③ ----- ----- ----- ----- <u>총리령으로</u>-----

현행	개정안
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u>전기가스열위원회</u>에----- -----, ----- -----. ④ ----- ----- ----- ----- ----- -----<u>총리령</u>으로----- -----<u>전기가스열위원회</u>에----- -----. ⑤ ----- ----- ----- -----<u>총리령</u>으로-----<u>전기가스열위원회</u>에-----, -- ----- -----. ⑥ <u>전기가스열위원회</u>는----- ----- ----- ----- -----. ⑦ <u>전기가스열위원회</u>가----- ----- ----- ----- ----- ----- -----

현행	개정안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8(과징금)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한다.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제10조의8(과징금)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u>는----- ----- ----- ----- ----- ----- ----- ----- ----- ----- -----. ② ----- ----- ----- ----- -----총리령 으로-----.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u>는----- ----- ----- ----- ----- ----- -----총리령으로----- -----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생략)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 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 ----- ----- ----- ----- ----- -----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 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 ----- <u>총리령으로</u> ----- ----- ----- ----- ----. -----.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	② ----- ----- <u>총리령으로</u> ----- ----- ----- ----- -----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 -----.

현행	개정안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u>총리령</u> 으로----- ----- -----. ----- ----- -----.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 ----- -----.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 ----- <u>총리령</u> 으로----- ----- ----- ----- <u>전기가스열위원회</u> 에

현행	개정안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u>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	-----, ----- ----- ----- ----- -----.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으로</u>----- ----- -----.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는 총리령으로</u>----- ----- ----- -----. ④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 -----. ⑤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 제20조(공급규정) ① ----- -----

현행	개정안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한다.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	----- -----<u>전기가스열위원회의</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u>-----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u>총리령</u>으로-----. ⑥ <u>전기가스열위원회</u>는----- ----- ----- ----- ----- ----- ----- ----- ----- ⑦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현행	개정안
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	----- ----- ----- -----. ⑧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 ----- -----.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 -----<u>총리령으로</u>----- ----- -----

현행	개정안
급계획을 작성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u>전기가스열위원회</u>에----- -----.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 ----- ----<u>총리령</u>으로----- ----- -----<u>전기가스열위원회</u>의 -----. -----.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u>는----- ----- ----- ----- ----- -----<u>총리령</u>으로----- -----. ③ -----<u>총리령</u>으로----- ----- ----- -----. ④ ----- -----<u>총리령</u>으로----- -----

현행	개정안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도시설 이용요령을 정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	----- -----<u>전기가스열위원회</u>에-----. -----. ⑤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u>는----- ----- ----- ----- -----. ② <u>전기가스열위원회</u>----- ----- ----- ----- ----- ----- -----. ③ ----- ----- ----- ----- ----- -----

현행	개정안
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 폐합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u>전기가스열위원회와</u>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조제1항3),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수출·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조의5제1항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2년마다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함(제18조의2제2항·제3항5).

또한,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 및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20조제1항 및 제39조의8제1항6)).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도입, 수급계획, 가스요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하여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⁷⁾.

그런데 액화천연가스(LNG)가 전기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고,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 안정 등 정책적 사유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에너지 요금 결정 등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규제기관이 필요하

6)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입자문위원회, 가스수급위원회,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한국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가스 분야 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의 결정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⁸⁾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련 사업자의 감독, 분쟁의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⁹⁾, 현행법상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공급규정의 승인 등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8)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음.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9)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2호)에 반영되어 있음.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주요업무	주체	
	현행 법률	개정안
가스도매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 취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전기가스열 위원회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가스수급계획 및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립		
도시가스요금,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독임제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② 기존에 별도로 수행하던 gas와 전기 등 각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나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계류되어 있는데, 가스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라는 점, 도시가스사업의 일부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

10)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67호, 제안일: 2024.9.26.)

[전기가스열위원회 및 가스위원회 관련 법률안 비교]

구분	김정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820호)	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204367호)
위원회 명칭	전기가스열위원회	가스위원회
위원회 성격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소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위원회 근거 법률	에너지법, 정부조직법	도시가스사업법
심의대상사업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도시가스사업
주요 기능	-도시가스·전기·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처분 -도시가스·전기·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감독 -도시가스·전기·집단에너지사업 등의 구조개편 -도시가스·전기·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등 -천연가스 수급계획 심의 -공급규정의 승인, 가스도매요금 총괄원가 산정 -배관시설 이용규정 승인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 물량 수입제한 심의 -천연가스 관련 법령, 규정의 심의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위원 중 3명은 상임
조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둔.	사무기구를 둔.

2. 개별 검토

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 이전의 적절성

도시가스 요금은 LNG 도입가격인 “원료비”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 및 가스소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인 “도매공급비” 및 “소매공급비”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은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가격의 변동을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¹¹⁾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상시 연동제 유보규정에 따라 국제유가 또는 환율 급등으로 LNG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동제를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¹²⁾.

또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산정한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¹³⁾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11)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며, 상업용, 발전용 원료비는 1개월마다 요금에 반영

12) 「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 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4. 비상시 연동제 유보

- 공사는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원료비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가스가격 안정 시 원료비 손실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3)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훈령)」 및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산업부고시)」에 의거해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을 산정함.

의¹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승인¹⁵⁾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가스요금의 산정 과정에 물가안정과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결정이 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가스도매요금의 결정 및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독임제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는 경우 다수 위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가스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은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히 현재 가스 도입, 수급계획, 가스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바¹⁶⁾,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 시 가스 분야 주요 정책을 독립적·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중립적 기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체계와 달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기가스열위원회¹⁷⁾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업무

16)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법률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결재,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21호)

제10조의6(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민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전기·가스·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0조의16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의 독자성과 업무량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요건에 부합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을 관장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이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므로¹⁸⁾,

전기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 공급약관의 인가와 같은 주요한 결정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¹⁹⁾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의 예와 같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 위원회의 신설·강화를 통해서 독임제 행정기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가스산업의 구조적 특성,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5개 과 및 전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의 독자성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사업 업무만을 분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신설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정부조직의 비대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

조항	조문내용
제7조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15조제2항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
제16조제2항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가격의 상한 고시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

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천연가스는 전력 생산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가스의 수급 및 가격변동은 전력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천연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2,309만 톤으로 총수요(4,540만 톤)의 50.9%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천연가스 수요 추이 (단위: 만톤)]

구 분	'87년	'97년	'02년	'09년	'13년	'15년	'18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87~'02	'03~'22	'87~'22
도시가스	7	577	1,119	1,563	1,995	1,727	2,137	2,200	2,231	40.3%	3.3%	17.9%
발 전	154	538	651	1,041	2,013	1,609	2,085	2,373	2,309	10.1%	6.9%	8.0%
합 계	161	1,115	1,770	2,604	4,008	3,336	4,222	4,573	4,540	17.3%	4.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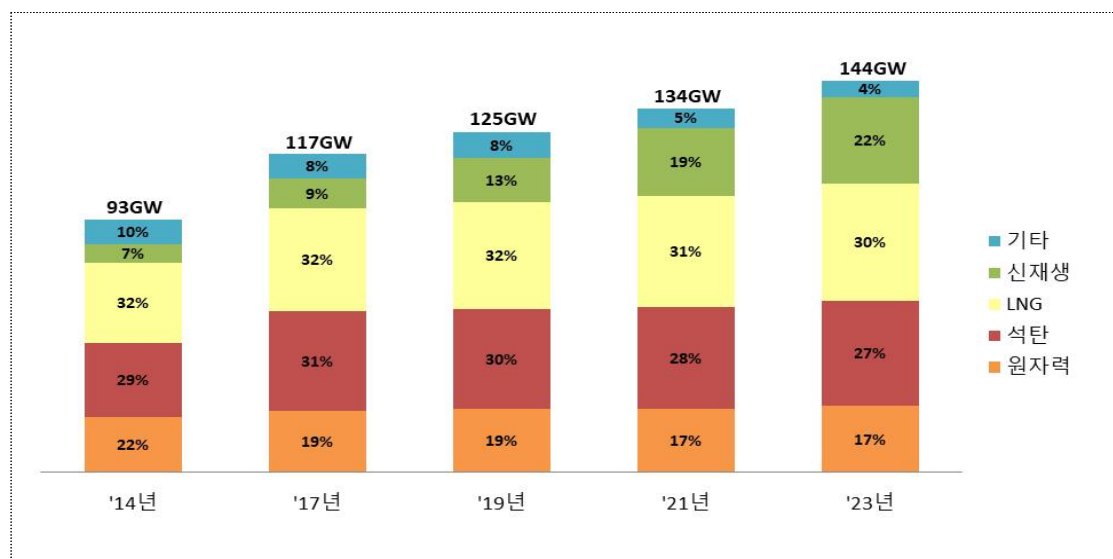
출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3~2036), 2023.4.

그리고 2023년 기준 LNG 발전 설비 용량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LNG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7%로 석탄(31%), 원전(31%)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료원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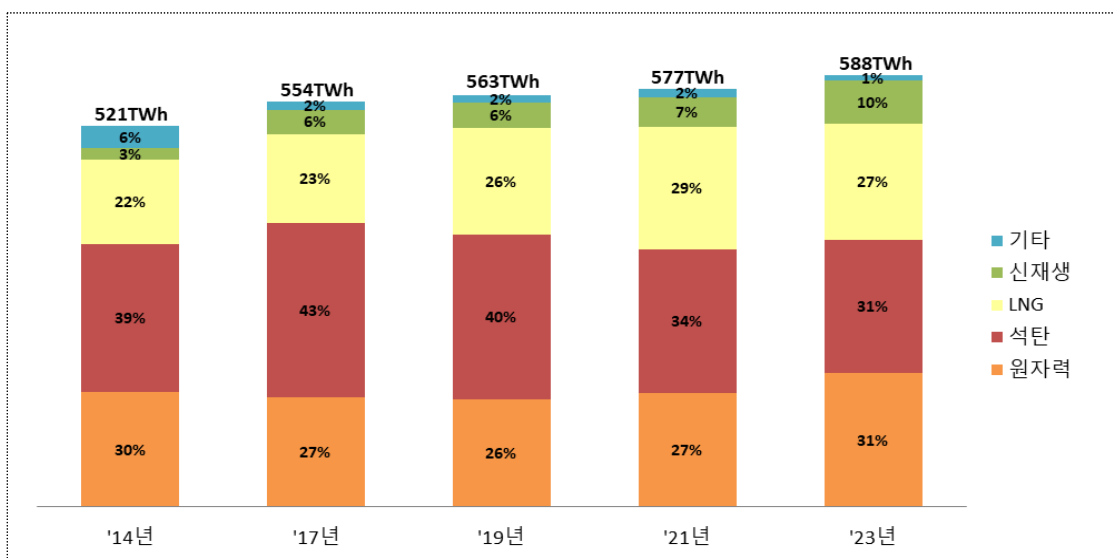
□ 발전설비 비중('23년) : LNG(30%), 석탄(27%), 신재생(22%), 원자력(17%)

< 원별 발전설비 비중 >



□ 발전량 비중('23년) : 석탄(31%), 원전(31%), LNG(27%), 신재생(10%)

< 원별 발전량 비중 >



출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2025.3.

또한 2024년 기준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의 93.3%가 LNG발전기에 의해 결정되는 등 천연가스는 전기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연료원별 SMP 결정 횟수 및 비율]

연도	LNG		유류		무연탄		유연탄		원자력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2020	6,634	75.5	0	0	104	1.2	2,046	23.3	0	0
2021	7,904	90.2	0	0	107	1.2	749	8.6	0	0
2022	7,621	87.0	125	1.4	9	0.1	1,003	11.4	2	0
2023	7,230	82.5	212	2.4	9	0.1	1,309	15.0	0	0
2024	8,199	93.3	59	0.7	19	0.2	492	5.6	5	0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에너지 분야별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의 경우 가스 도입, 수급계획, 가스도매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도입자문위원회, 가스수급위원회,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고 있고,

전기사업의 경우 전기사업의 허가, 공급약관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²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 전기위원회 개요는 참고자료 2 참조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전기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 위원회는 없는 상황임²¹⁾).

개정안은 가스시장, 전력시장, 열에너지시장 등 에너지 시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법」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련 사업자의 감독, 분쟁의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규제의 일관성과 통일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에너지 시장의 복잡성 증가, 부문 간 상호의존성 강화, 통합적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전력과 가스를 별도로 규제하던 체계에서 전력과 가스를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15개 국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21)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해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임.

가의 경우 전력 및 가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 철도, 수도 등 네트워크 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²²⁾.

다만, ①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에너지시장 개방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증가로 인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 등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점²³⁾, ② 성격이 상이한 가스시장, 전기시장 등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경우 각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규제의 복잡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 ③ 단일 기관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정책 결정의 오류가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⁴⁾.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원별 특성 및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통합 규제위원회의 설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2)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2024.9., pp.65~68

23) 가스시장은 도입, 도매, 소매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도입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왔으나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구조이고, 도매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소매시장은 34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로 분할하여 독점 운영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전기시장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발전시장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전력시장에서 전력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전, 배전, 판매 시장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24)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2024.9., pp.96~97

따라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의 에너지 추진체계와 개정안의 전기가스열위원회를 통한 일원화된 에너지 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

※ 참고자료

1. 가스 분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구 분	위원회명 (설치)	법적 근거	운영현황
도입	도입자문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학계·업계·연구계 등에서 가스, 전력, 자원개발, 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 LNG 계약체결 추진 등 필요시 수시개최 (기능) LNG 계약체결 절차 및 계약조건 적정성 검토
수급계획	가스수급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학계·업계·연구계 등 가스·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로 구성 (운영)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년마다 수립) 관련 필요시 수시 개최 (기능) 수급계획 방향, 정책사항 결정 및 실무위 원회 총괄·조정
가스요금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정부·학계·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 도매공급비 조정(매년 5월)을 위해 매년 개최, 도매요금 제도 변경 등 필요시 개최 (기능)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사항, 천연가스 도매요금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정부·학계·업계 등에서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 도매공급비 산정시 검증(5월 이전)을 위해 매년 개최 (기능) 도매공급비 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증
배관시설 이용	배관망이용 심의위원회 (한국가스공사)	없음	(현황) 정부·한국가스공사·민간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기능) 가스배관시설 이용에 관련한 사항 심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위원회 개요

- (목적)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설치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1.4월 발족

주요기능

- ① 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분할·합병·주식취득 인가 등 심의
- ② 전기요금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제·개정 심의
- ④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 ⑤ 전기사업자 간의 분쟁 재정(의결) 등

- (구성) 전기위원회(본회의), 3개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전기위원회 (본회의)

-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 비상임위원 8, 상임위원(에너지산업실장)
- 임기 : 3년(연임 가능)
- 임명 :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위촉
- 회의 : 월 1회(셋째주 또는 넷째주 금요일, 서울)

• 전문위원회(3개)

- ① 법률·분쟁조정
- ② 전력계통 및 신뢰도
- ③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 구성 : 각 위원회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임기 / 임명 : 2년 / 위원장이 위촉
- 기능 : 중요 안전 사전 검토·자문 등
- 회의 : 필요시

• 사무국 (정원 8, 현원 8명) (사무국장(3·4급) 1명, 사무관 4명, 주무관 3명)

- 산업부 소속기관
- 안전 예비검토 등 위원회 사무처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